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97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조인철 · 허성무 · 안도걸
한정애 · 박민규 · 전진숙
이건태 · 김우영 · 박희승
김태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의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제7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용자”를 “임금등, 생계비 비용 용자 및 긴급 용자”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유지의 긴박한 필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 용자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신 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신 설>	②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제7조의3(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용자) ① (생략)	제7조의3(채불 임금등 및 생계비용자)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	② -----

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유지의 긴박한 필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u>임금등, 생계비 비용 융자 및 긴급 융자</u>----- ----- -----.